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9월 14일(화) 총 2매			
담당 부서	농업기술센터	담당자			• 지원기획팀장 이진철 ☎440-6911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**인천시,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,
 잘 사는 농업인 위한 지원 첫걸음**
 - 14일, 인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인천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4일 인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인천 농업의 ‘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, 잘 사는 농업인 구현’을 위해 인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인천지역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강영 농업인천본부 본부장 등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은 경쟁력 있는 디지털 농업 등의 촉진을 통해 지역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결됐다.

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△지능화·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촉진, △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, △지역 단위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보급 및 현장 확산, △도시농업 확산 및 실천인력 육성 협력, △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, △기술·정보·경영 자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으로 농업에 관한

기술 및 정보 공유 등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.

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“지속적인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양 기관의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돼 기쁘고 나아가 도시농업, 치유농업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<붙임> 업무협약서 1부.

<붙임> 업무협약서

“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, 잘사는 농업인” 구현을 위한

업 무 협 약 서

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인천지역본부(이하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상호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농업·농촌에 관한 연구와 기술·정보 공유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을 촉진하고,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인천지역본부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,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업) 양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및 붙임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.

- 가. 지능화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촉진
- 나. 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6차산업화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
- 다.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보급 및 현장 확산
- 라. 도시농업 확산 및 실천인력 육성 협력
- 마.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
- 바. 기술·정보·경영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
- 사. 기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협력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,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비용부담)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분담한다.

제5조(기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 과정을 통하여 인지한 상대방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에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기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)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서 보관) 양 기관의 장은 위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,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9월 14일

 인천광역시
농업기술센터

 농협중앙회
인천지역본부

소 장 조 영 덕

본부장 이 강 영